

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4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. 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현행 규정중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환경부 준칙(표준안)이 시달됨에 따라 동 준칙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하수발생량의 산정방법, 해당 원인자부 담금 부과액,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등을 매년 2월말 까지 시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 (안 제17조제3항).
- 나. 사용료·점용료·원인자부담금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8조제2항).
- 다.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식을 현실성 있게 정함 (안 별표 4).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하수도법 제32조, 동법시행령 제20조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□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2. 2. 25. ~ 3. 18. (20일간)

□ 기타참고사항 : 별첨

- 하수도사용조례 개정 표준안(환경부)

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안산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(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,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)
2.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른 세제곱미터(m^3)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
3.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

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제1항의 가산금에 추가하여 징수 할 수 있다.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〈별표4〉를 “별지”와 같이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원인자부담금 공고의 경과조치)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고는 이 조례 공포후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③(원인자부담금 부과의 경과조치) 별표4 (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)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항에 의한 공고일이후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부터 적용한다.

소관 실·과		하수행정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하수행정과장 이 종 현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하수정비담당 김 학 민
	담당자 성명·전화	유 진 회 (행정 2448)

(별표 4)

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(제17조제3항제2호 관련)

○ 원인자부담금 =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+ 하수관거
원인자부담금

-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

$$= m^3\text{당 원인자 부담금}(원/m^3) \times \text{하수발생량}(m^3/\text{일})$$

※ m^3 당 원인자부담금

$$= \text{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} \times \frac{1}{\text{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용량}(m^3/\text{일})} \times a$$

※ 총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,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

※ m^3 당 원인자부담금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계산방법에 의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매년공고(공보)

-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

$$= \text{하수관거 총사업비} \times \frac{\text{개발지역내 발생하수량}(m^3/\text{일})}{\text{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}(m^3/\text{일})} \times a$$

※ 총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,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

$$a : (1 + \frac{\text{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평균 생산자물가상승률}}{100})^n$$

n: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후 경과 년수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17조(원인자부담금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~ 4. (생략)</p> <p><u>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 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 기준(한국산업규격KSF1507)에 의한다.</u></p>	<p>제17조(원인자부담금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안산시공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(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,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) 2.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른 세제곱미터(m^3)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.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가산금) ① (생략) <u>〈신설〉</u></p>	<p>제18조(가산금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의 가산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
별표4 (생략)	별표4 (별지참조)

(별표 4)

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(제17조제3항제2호 관련)

□ 현행

○ 원인자부담금 =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

+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

-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

$$= \text{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} \times \frac{\text{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}(m^3/\text{일})}{\text{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}(m^3/\text{일})} \times a$$

* 총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,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

-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

$$= \text{하수관거 총사업비} \times \frac{\text{개발지역내 발생하수량}(m^3/\text{일})}{\text{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}(m^3/\text{일})} \times a$$

* 총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,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

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년평균 도매물가상승률

$$a : (1 + \frac{100}{})^n$$

n: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후 경과 년수

(별표 4)

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(제17조제3항제2호 관련)

□ 개 정

- 원인자부담금 =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+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

-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

$$= m^{\circ}\text{당 원인자 부담금(원}/m^{\circ}) \times \text{하수발생량}(m^{\circ}/\text{일})$$

* m° 당 원인자부담금

$$= \text{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} \times \frac{1}{\text{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용량}(m^{\circ}/\text{일})} \times a$$

* 총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,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

* m° 당 원인자부담금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계산방법에 의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매년공고(공보)

-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

$$= \text{하수관거 총사업비} \times \frac{\text{개발지역내 발생하수량}(m^{\circ}/\text{일})}{\text{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}(m^{\circ}/\text{일})} \times a$$

* 총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,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

$$a : (1 + \frac{\text{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평균 생산자물가상승률}}{100})^n$$

n: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후 경과 년수